

『 2016년 도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안 』

(송정동 및 도량동 주민센터 신·증축)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송정동 주민센터는 35년이 경과한 노후건축물로 신축이 필요하며,
- 도량동 주민센터는 인구증가, 복지수요 급증 등으로 주민복지시설, 회의실 등을 증축하여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【취득재산】

☐ 송정동 주민센터 신축

- 위 치 : 송정동 72번지 외 1필지
- 대 상 : 건물 지하1층, 지상4층 / 연면적 2,740m²
- 기준가격 : 58억원

☐ 도량동 주민센터 증축

- 위 치 : 도량동 792-254번지 외 5필지
- 대 상 : 건물 지상3층 / 연면적 800m²(기존 534.01m²)
- 기준가격 : 18억원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, 동법 시행령 제36조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0조, 동법 시행령 제7조

5. 검토의견

○ 본 관리계획안은

- 노후화된 송정동 주민센터를 신축하고,
- 인구증가, 복지수요 급증 등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도량동 주민센터를 증축하고자 제출된 안건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송정동 72번지 외 1필지에 지하1층, 지상4층, 연면적 2,740㎡로 송정동 주민센터를 58억원(기준가격)으로 신축하고,
- 도량동 792-254번지 외 5필지에 지상3층, 연면적 800㎡로 도량동 주민센터를 18억원(기준가격)으로 증축하고자 하는 것임.

○ 검토결과

본 관리계획안은

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, 「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」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, 건물 노후화 및 인구증가, 복지수요 급증으로 인한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동 주민센터를 찾는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주민센터의 신·증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송정동 주민센터 신축에 58억원, 도량동 주민센터 증축에 18억원이 투입되는 등 공유재산 취득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